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1271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 12. 24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10. 23 ]

lmy5804@daum.net



## [두부분가어묵] 정 보 공 개 서

후 푸드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후 푸드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상곡1길 18

[대표 전화번호] 1577-0515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1577-0515

## 목 차

|                                        |    |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4  |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7  |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11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12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19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32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34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36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37 |

- [별첨1] 가맹본부 재무상황  
 [별첨2]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별첨3]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별첨4] 가맹금 예치 신청서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호  | 사 용 브랜 드    | 주 소                   |         |              |              |
|------|-------------|-----------------------|---------|--------------|--------------|
| 후 푸드 | 두부분가어묵 외 1개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상곡1길 18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개인사업자       | 2013.10.1             | 이몽용     | 1577-0515    | 051-727-5886 |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605-26-71732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두부분가어묵”이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두부분가어묵                                                                              |                                                          |
| 상 호      | 두부분가어묵 OO점                                                                          |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표(서비스표) |  | 출원번호 : 제 41-2014-0018437 호<br>공고번호 : 제 41-0319161-0000 호 |

|           |        |  |
|-----------|--------|--|
| 광 고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두부분가어묵 |  |

명칭은 현재 브랜드를 나타내며, 상호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내용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가맹점포명입니다.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총자산     | 총자본    | 총부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51,828  | 40,042 | 11,786 | 470,505 | 39,582 | 40,042 |
| 2022년 | 47,848  | 32,721 | 15,126 | 347,180 | 48,712 | 48,712 |
| 2023년 | 138,670 | 45,822 | 92,847 | 382,578 | 47,431 | 47,431 |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5.-1) 표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당사는 「두부분가어묵 및 옐로우피쉬」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각 브랜드별 매출액 추정이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이몽용 | 대표   | 2013.10 ~ | 후 푸드 대표 | 가맹사업 총괄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   | 2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후 푸드  | 가맹사업<br>경영 | 2022.02<br>~ 현재 | 엘로우피쉬 (등록번호 20214119) 라는<br>영업표지의 기타 외식 브랜드 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일                   | 출원번호<br>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등록 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 상표<br>서비스표 | 2014.5.12 출원<br>2015.4.13 등록 | 출원번호<br>제 41-2014-0018437 호<br>등록번호<br>제 41-0319161-0000 호 | 이몽용            | (2025.4.13)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두부분가어묵] 가맹사업 현황

### 1. [두부분가어묵]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3.10

### 2. [두부분가어묵] 연혁

| 가맹본부<br>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br>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후 푸드       | 두부분가어묵 | 이몽용 | 2013.10<br>~ 현재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상곡1길 18 |

### 3. [두부분가어묵]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대분류 | 소분류 (주요 상품)     |
| 두부분가어묵 | 한식  | 두부, 어묵, 김 등 반찬류 |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두부분가어묵]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 전체 | 10         | 10  | -   | 10         | 10  | -   | 9          | 9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8          | 8   | -   | 8          | 8   | -   | 7          | 7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2 | 2 | - | 2 | 2 | - | 2 | 2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두부분가어묵]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10 | -     | -     | -     | -     | 10 |
| 2022 | 10 | -     | -     | -     | -     | 10 |
| 2023 | 10 | -     | -     | 1     | -     | 9  |

##### 6. [두부분가어묵]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br>12.31 | 2022.<br>12.31 | 2023.<br>12.31 |
| 가맹본부 | 후 푸드  | 엘로우피쉬 | 20214119      | 기타 외식 | -              | 5/-            | 3/-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 역 | 2023년 말<br>가맹점 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 고   |
|-----|------------------|-------------------------|--------------|------------------|--------------|------------------|--------------|-------|
|     |                  | 연간<br>평균 매출액            |              | 연간<br>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br>평균 매출액(하한) |              |       |
|     |                  | 연간<br>평균<br>매출액         | 면적<br>3.3㎡ 당 | 상한               | 면적<br>3.3㎡ 당 | 하한               | 면적<br>3.3㎡ 당 |       |
| 전체  | 9                | 209,074                 | 20,837       | 327,356          | 44,113       | 136,929          | 10,000       | 9곳 산정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부산 | 7 | 220,546 | 23,380 | 327,356 | 44,113 | 136,929 | 10,532 | 7곳 산정 |
| 대구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경남 | 2 | -       | -      | -       | -      | -       | -      | 5곳 미만 |
| 제주 | - | -       | -      | -       | -      | -       | -      |       |

위 표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가맹점 중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당사 9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당사 물류 공급액\*2.5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 8. [두부분가어묵]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두부분가어묵]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9          | 2,854일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두부분가어묵]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9-1)]을 참고하십시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중소기업은행  | 가맹금예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 1566-2566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중소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중소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 후 [www.ibk.co.kr](http://www.ibk.c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의 경로로 가맹금 예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두부분가어묵]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br>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br>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A타입 5,500<br>B타입 11,000 |                 |                             |                                                                                                      |                                         |
| 가맹비 | 3,300<br>(공통)           | 가맹<br>계약과<br>동시 | 가맹사업법에<br>따라 일부<br>반환될 수 있음 | 가맹점 오픈을<br>위하여<br>소멸되는 비용<br>-계속 가맹금 (가맹비의 50%)<br>-점포 실사<br>-가맹점 오픈 시 운영을 위한<br>자료 제공<br>-오픈 시 인력지원 |                                         |
| 교육비 | A타입 2,200<br>B타입 7,700  |                 |                             | 교육 개시 이후                                                                                             | -개정 전 조리/서비스/운영<br>-두부 제조 교육 시 550만원 추가 |

\*A타입 - 즉석 어묵 / B타입 - 즉석 어묵 + 즉석 손두부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1,000 |              |                                                                     |    |
| 계약이행<br>보증금 | 1,000 | 가맹 계약과<br>동시 |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br>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br>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br>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 신규 가입자                 |
| 합계       | A타입 6,500 / B타입 12,000 |
| 가맹비      | 3,300                  |
| 개정 전 교육비 | A타입 2,200 / B타입 7,700  |
| 계약이행 보증금 | 1,000 (부가세 없음)         |

\*A타입 - 즉석 어묵 / B타입 - 즉석 어묵 + 즉석 손두부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br>대상 | 금액                                                                     | 면적(3.3㎡)<br>당 금액         | 지급<br>기한 | 반환 조건           | 비 고                    |
|------------------|----------|------------------------------------------------------------------------|--------------------------|----------|-----------------|------------------------|
| 총계               |          | A타입 31,900<br>/ B타입 56,650                                             | A타입 3,190<br>/ B타입 5,665 |          |                 |                        |
| 어묵<br>및 두부기계     | 협력업체     | A타입 7,150<br>B타입 21,450                                                | -                        | 협의       | 공사·발주<br>전 계약취소 | B타입<br>(두부<br>제조기계 포함) |
| 인테리어<br>(점포내장공사) | 미지정      | 33㎡(10평) 기준<br>A타입 12,100<br>B타입 16,500<br>(철거, 전기승압,<br>덕트, 냉난방 등 별도) | A타입 1,210<br>/ B타입 1,650 | 협의       |                 |                        |

|             |            |                         |   |    |  |                      |
|-------------|------------|-------------------------|---|----|--|----------------------|
| 전면 간판 외     | 협력업체       | 2,750                   | - | 협의 |  |                      |
| 기타 기기 및 포장기 | 미지정        | A타입 6,600<br>B타입 12,650 | - | 협의 |  | B타입<br>(공국전용 냉각기 포함) |
| 최초 공급상품     | 가맹본부, 협력업체 | 3,300                   | - | 협의 |  |                      |
| POS         | 미지정        | 월 사용건에 따라 무상제공          |   | 협의 |  |                      |

\*A타입 - 즉석 어묵 / B타입 - 즉석 어묵 + 즉석 손두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1평) 당 **금삼십삼만원정(₩330,000)**을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비고                                                               |
|-------|---------------------------------------------------------------------------|------------------------------------------------------------------|
|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20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두부분가어묵]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                                                | -                    | -      | -           | B타입<br>월 22만원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가맹본부 50%<br>가맹점사업자 50%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광고 미집행 | 광고 집행       |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행사에 따라<br>각 가맹점별로 산정                             |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판촉 미집행 | 판촉 집행       |                                  |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 가맹본부 |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br>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 협의                   | 미반환    | 변경설치        |                                  |
|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 미지정  | 실비                                               | 지정일                  | 미반환    | 실사용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미지정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협의                   |        |             | VII.<br>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방제 용역비         | 미지정  | 실비                                               | 지정일                  | 미반환    | 실사용         |                                  |
| 자연이자           | 가맹본부 | 연 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대금<br>결제<br>연체 시                 |



\*A타입 - 즉석 어묵 / B타입 - 즉석 어묵 + 즉석 손두부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점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30일]**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두부분가어묵]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희망시, 그 신청이 당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오픈 영업지원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양수가 가능합니다.(단, 양도인의 잔존하는 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유효함).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신규 가맹 계약을 요구할 경우, 양수인은 당사에 오픈 영업지원비를 포함한 가맹비 전액과 교육비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7-2)]을 참고하십시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되며, 매장 내의 집기 비품 등 [두부분가어묵]의 로고가 사용된 모든 내용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일까지 상호·간판 등 당사의 로고가 부착된 각종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 또는 방치할 경우,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및 당사의 거래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사업내용, 고객 정보 등을 누설하는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로 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두부분가어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두부분가어묵]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두부, 어묵, 김, 자반 등 각종 반찬류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경고<br>2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경고<br>3회 이상 위반: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통지 |    |

당사는 두부, 어묵, 김, 자반 등 각종 반찬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상품의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br>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소비자 이외의<br>제3자 또는<br>다른 가맹점 | 본 정보공개서<br>V-3-1)에서<br>지정된 가맹점 판매 상품 | 거래 상대방별로<br>기재된 제품은<br>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구두 경고<br>2회 위반 : 서면 시정경고<br>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두부, 어묵, 김, 자반 등 각종 반찬류 | 개별 상품별로 상이  | 별도 통지    |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두부, 어묵 등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 | 두부분가어묵      |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 방법                |
|-------------------------------------------|----------------------|
| 일반 주거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br>중심으로 반경 <b>1km</b> |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

다만, 일반 주거지역 외 지역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에 따라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 도심의 복합(대형)상권 및 중심 상권
- 기업체·학교·관공서·병원·백화점·할인마트·공항·호텔·지하상가·놀이동산 등의 특수상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br>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br>변동되는 경우<br>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br>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br>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br>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br>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br>변경(안) 작성 →<br>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br>통지 → 가맹점사업자<br>동의 → 영업지역 변경<br>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br>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br>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15일<br>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br>완료(신규 점포 입점<br>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가맹사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100%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100%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두부분가어묵]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 또한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져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br>(계약만료일:<br>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br>~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br>~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br>~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br>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br>~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br>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       |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br>(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 계약서 제8조 제2항 |
|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
|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을”이 상품대금, 설비대금 기타 금전채무의 납입을 불이행, 거부, 지체한 경우 | 계약서 제25조 제1항 |
| ○ “갑”의 품질 관리 및 위생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
| ○ “을”이 “갑”과 협의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

|                                                                                                  |              |
|--------------------------------------------------------------------------------------------------|--------------|
| ○ “을”이 “갑”과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 제36조 제1항 |
| ○ “을”이 노후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 ○ “을”이 “갑”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가맹계약서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
| ○ “을”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
| ○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갑”이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을”이 가맹계약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을”이 가맹계약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              |
| ○ “을”이 가맹계약서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서면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              |
| ○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 계약서 제36조 제2항 |
|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              |

|                                                                                                                                                                                                                                              |  |
|----------------------------------------------------------------------------------------------------------------------------------------------------------------------------------------------------------------------------------------------|--|
|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
|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본사 (1577-0515)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 및 점포실사에 대한 대가 제외), 교육비 및 보증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본부 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시 가능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두부분가어목]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br>두부, 어묵, 김 등 반찬류<br>제조·판매 전문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br>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br>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본사<br>(1577-0515)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두부분가어묵]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09:00~20:00 | 월 25일 이상 영업<br>(매장상황에 따라 휴무일 조정) | 문의: 본사<br>(1577-05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개별 점포별로 상이 | 직접 근무    | 배우자, 친·인척 등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br>→ 관리표 작성 | 수시      | 가맹관리팀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양행방문 → 주문 → 친절도         | 수시      | 가맹관리팀 |    |

|       |                                                     |    |       |  |
|-------|-----------------------------------------------------|----|-------|--|
|       |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       |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br>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가맹관리팀 |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두부분가어묵]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행사에 따라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광고성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비고                                                             |
|----------------|-----------------------|-----------------------|-----------------------|-----------------------------------------------------------------------------|----------------------------------------------------------------|
| 광고<br>전체<br>행사 | 상품 및<br>브랜드광고         | 50%                   | 50%<br>(모든 가맹점<br>균분)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br>광고참여 여부 결정 →<br>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br>(TV, 라디오, 신문,<br>협찬등), 명절, Day<br>이벤트 행사<br>(전국 행사) |
|                | 상품광고<br>+ 가맹점<br>모집광고 | 50%                   | 50%<br>(모든 가맹점<br>균분) |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부담                  | -                     |                                                                             |                                                                |
| 판촉<br>행사       | 할인행사                  | 할인금액<br>(소비자가)<br>50% | 할인금액<br>(소비자가)<br>50% | 행사 계획 공고 →<br>가맹점부담액 제시 →<br>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br>행사 시행 → 행사 종료후<br>최종 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br>절차를 거친 후<br>전체 가맹점사업자<br>70% 이상의<br>동의 시 전체 적용      |
|                | 증정행사                  | 증정상품<br>10%           | 증정상품<br>90%           | 행사 계획 공고 →<br>가맹점부담액 제시 →<br>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br>가맹점별 분담금 확정·납부<br>→ 행사 시행   | "                                                              |
|                | 팸플렛<br>등 제작           | 판촉물<br>제작비용<br>10%    | 판촉물<br>제작비용<br>90%    | "                                                                           | "                                                              |
|                | 기타<br>개별행사            |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에 따라 최초 가맹금의 10~5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위약벌과 별도로 투입된 점포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상액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text{남은 계약일} \times \text{금삼만원정(₩30,000)}$ 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이천만원정(₩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금액              |
|-------------------|-------------------------------------------------------|-----------------|-------------------|
| 합계                |                                                       | 45일 내외          | [38,400 / 68,650]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5            |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br>- 가맹계약서 제공 | D-45~43         | -                 |
| 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0~27         |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br>(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 D-26            | -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예치                                              | D-26            | 6,500/12,000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5~23         | 31,900/56,650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일정 확인                                             | D-222           |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2~3<br>(20일) | -                 |
| 교육실시              |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6~3<br>(14일) | 가맹금에 포함           |
| 설비 및 집기           | - 주방 및 홀 설비<br>-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 D-10~2          |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표준모델 33㎡(10평)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br>사유 | 가맹본부 부담<br>비용 항목 | 가맹본부<br>부담 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비고 |
|--------------|------------------|---------------|------|--------------|----|
|--------------|------------------|---------------|------|--------------|----|

|                                         |                                                                                                                          |                                                                          |                                                                                                                                                                                                                                                                                                                                                                                                           |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br>○인테리어 공사 비용<br>(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br>○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br>○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br><br><분할지급 시 절차><br>○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br>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br>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및 내용                                                     | 절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공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본사 (1577-0515) |

|              |                                                             |                                                                                                                                                 |            |  |
|--------------|-------------------------------------------------------------|-------------------------------------------------------------------------------------------------------------------------------------------------|------------|--|
|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공 | 가맹점 사업자 부담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두부분가어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어묵·두부 제조, 매장 운영 등 | 실습교육<br>현장교육 |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어묵·두부 제조, 매장 운영 등        | 실습교육         | 수시               |       |
| 특별 교육 | 신상품 출시, 고객 서비스 등         | 실습교육         | 수시               |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두부분가어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신규 교육 | 14일  | 최초 가맹금에 합산 | 최초 계약시 이수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2] 인근 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 No. | 가맹점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      |                         |         |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제공일시 |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 제공받은 장소 |  |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별첨3]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제공일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 제공받은 장소 |  |
| <p>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_____.</p> <p>(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p> |                             |         |  |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제공일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 제공받은 장소 |  |
| <p>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_____.</p> <p>(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p> |                             |         |  |

[별첨4]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측시 |
|-------------|-----------------|------|----|
| 신청인         | 상호(가맹점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가맹본부        | 상호(영업표지)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예치가맹금       | ₩ _____ (금 원 정) |      |    |
| 신청인의<br>계좌  |                 |      |    |
| 가맹본부의<br>계좌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_\_\_\_\_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br>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br>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